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. 27 선고 2019가단2441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연

변론 종결 2021. 1. 13

판결 선고 2021. 1. 27

주 문

1.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의 2019. 6. 10.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9. 6. 14. 접수 제9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주식회사 레이하, 'B'이라 한다)이 C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7. 3. 3. 180,000,000원을 보증기한 2018. 3. 2.까지(이후 2020. 2. 28.까지로 순차 연장됨)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다.

○ B에 2019. 6. 7. 부도가 발생하여, 원고는 2019. 8. 6. C은행에 172,543,9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채권보전 비용으로 262,940원을 지출하였다.

○ B은 부도 발생 후인 2019. 6. 10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,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, 채권최고액 36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,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2019. 6. 14.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92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○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합계 6,985,74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,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,709,405,405원이 존재하였다.

	채권자	채권액
1	E	379,408,498
2	E	47,521,375
3	F	148,900,000
4	서울신용보증재단	81,337,717
5	원고	172,543,966
6	G은행	148,727,212
7	H은행	149,169,981
8	H은행	581,796,656
		1,709,405,405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2내지 5, 7, 9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,이하 같다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체결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,B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,그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,원고의 요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또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, 을 1내지 8,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인데, D과 B의 각 소재지,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 점, B의 부도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B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,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것이므로,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승혜

별지